|  |  |  |
| --- | --- | --- |
|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  제세[2017]4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소형•저이윤기업 발전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7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소형•저이윤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의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보다 낮은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상하여, 20%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앞서 말한 소형•저이윤기업은 국가 제한 및 금지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또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1.1 공업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는 10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1.2 기타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는 8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본 통지 제1조에서 칭하는 종업원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구축한 직원 수와 기업이 받아 들인 노무파견 근로자수를 포함한다.  일컫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지표는 기업의 연간 분기 평균값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값= (분기기초값+분기기말값)÷2  연간 분기 평균값= 연간 각 분기별 평균값의 합÷4  연도중에 개업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간주하고, 상술한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34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5]99호)는 2017년1월1일부터 폐지한다.  4. 각급 재정 및 세무부처는 엄격히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형•저이윤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선전지도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우대정책이 요구수준에 도달하여 실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6월6일 |  | **关于扩大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范围的通知**  财税〔2017〕43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进一步支持小型微利企业发展，现就小型微利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  　　一、自2017年1月1日至2019年12月31日，将小型微利企业的年应纳税所得额上限由30万元提高至50万元，对年应纳税所得额低于50万元（含50万元）的小型微利企业，其所得减按50%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前款所称小型微利企业，是指从事国家非限制和禁止行业，并符合下列条件的企业：  　　（一）工业企业，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50万元，从业人数不超过100人，资产总额不超过3000万元；  　　（二）其他企业，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50万元，从业人数不超过80人，资产总额不超过1000万元。  　　二、本通知第一条所称从业人数，包括与企业建立劳动关系的职工人数和企业接受的劳务派遣用工人数。  　　所称从业人数和资产总额指标，应按企业全年的季度平均值确定。具体计算公式如下：  　季度平均值＝（季初值＋季末值）÷2  　全年季度平均值＝全年各季度平均值之和÷4  　　年度中间开业或者终止经营活动的，以其实际经营期作为一个纳税年度确定上述相关指标。  　　三、《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财税〔2015〕34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扩大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范围的通知》（财税〔2015〕99号）自2017年1月1日起废止。  　　四、各级财政、税务部门要严格按照本通知的规定，积极做好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宣传辅导工作，确保优惠政策落实到位。  财政部  　税务总局  2017年6月6日 |